
27-2.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 여러가지 신고, 한번에 팍팍! -

2014. 7.



법무부

27-2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과제 분류		주관 기관 (관련 기관)	법무부 체류관리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과제 담당자	김태형 사무관	담당자 전화번호	02-2110-4059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고용주가 관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법무부와 고용부에 이중으로 신고의무 부담
 -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제17조
- 종래 법무부에서 일원적으로 외국인을 관리하였으나, '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법무부와 고용부의 중복 관리 발생
 - *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송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 다른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일원적으로 관리

□ 문제점

- 고용주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 발생
 - * 출입국관리법(법무부)상 동일한 내용이 있음에도 '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시 고용관리라는 명목하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의무부과
- 착오로 어느 한쪽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로 인해 민원 발생 (법무부 200만원, 고용부 500만원)
- * 고용주가 법무부나 고용부 중 한쪽에 신고하면 다른 한 곳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나. 추진 내용

- ◆ (정책 목표) 이중신고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
- ◆ (주요 고객)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를 고용한 고용주

구 분	추진 전	추진 후
신고사항	• 양 부처 신고사항 일부 상이	• 신고사항 일치
신고방법	• 출입국사무소, 고용센터 2회 방문 • 온라인(www.hikorea.go.kr.)	• 출입국사무소, 고용센터 중 1곳 방문 • 온라인 신고절차 대폭 간소화
위반시 제재조치	• 신고누락 시 누락된 부서에서 처벌 • 양 부처 모두 누락 시 이중처벌	• 누락 시 처벌 없어짐 • 양 부처 모두 누락 시 발견부처 처벌 (해당내용 법률안 심의 중)
기타	• 취업개시신고 논의중단	• 취업개시신고 일원화 추진 • 근무처변경허가제도 개선 추진

□ 고용변동신고(방문, 팩스) 일원화

- 고용주가 법무부와 고용부를 모두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느 한 부처에만 신고해도 양쪽에 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게 일원화 추진
 - * 온라인 신고는 '11.10월 이미 일원화 완료되어 방문·팩스 신고에 대하여 추진
 - 고용주의 신고사항을 양 부처가 동일하게 하고, 접수한 부처가 이를 전산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송부하면 상대방부처에서 신고한 것으로 처리
- 고용주 불편해소를 위해 제도 선(先) 시행
 - 법무부의 경우 신고서가 법정서식으로 되어 있어 시행규칙 개정이 불가피하나 신속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일원화 선 시행(14.6.30.)

□ 온라인 신고절차 개선

- 고용주의 방문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온라인 신고 일원화 실시
 - * 그간 고용주 불편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양 부처가 2년 반의 논의 끝에 `11.10월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로 온라인신고 일원화 합의

- 양 부처의 외국인 성명표기 방식 상 차이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사용실적 저조

* '13년말 현재 법무부 접수 14.5만 건 중 온라인 신고 1만여 건에 불과

○ 온라인 신고 활성화를 위한 하이코리아 개편작업 완료('14.6.30.)

* 개편 내용은 첨부된 '하이코리아 개선 전후 비교' 참조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한 추가과제 발굴 >

○ 취업개시신고 일원화 추진

- 외국인 채용단계에서도 양 부처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정책대상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추진 중단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교법 제12조)

* 신고의무의 주체(법무부 : 외국인, 고용부 : 고용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 일원화가 추진되다가 중단

- 채용단계에 있어서 이중신고도 해고 등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원화하기로 합의

○ 근무처변경허가제도 개선 추진

-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다시 법무부로부터 근무처 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는 불편 존재

* 고용주가 고용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았으니 법무부에는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허가를 누락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이중관리로 인한 문제 심각

○ 외국인근로자 성명표기방식 개선 추진

- 양 부처의 성명표기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고용부에 성명표기방식 일치 제안

* 법무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외국인성명을 표기하나, 고용부는 송출국 현지의 송출기관에서 입력한 성명 사용하여 개선 요구

다. 추진경과 및 일정

□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 '04. 8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중복신고 문제 발생
- '11.10월 법무부 하이코리아로 온라인 신고 일원화 실시
- '14. 5월 연계프로그램 구축 및 시범서비스 시행
- '14. 6월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시행
- '14년 하반기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추가과제 (취업개시신고, 근무처변경허가, 외국인근로자 성명표기)

- '14. 7월 법무부·고용부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 '14.12월 전산프로그램 구축 및 시범 운영 (합의 시)
- '15. 1월 제도 개선 내용 시행 (합의 시)

< 연도별 이행계획 >

	'14년	'15년	'16년	'17년
주요 이행 계획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외국인근로자 성명표기 방식 개선	- 취업개시신고 일원화 실시 - 근무처변경제도 개선	- 서비스 보완 및 개선	- 서비스 보완 및 개선
소요 예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라. 기대 효과 및 정부3.0 가치

□ 기대 효과

- '13년 기준으로 13.5만 건의 이중신고 불편 해소
 - * 전체 고용변동신고 14.5만 건 중 방문 2만 건, 팩스 11.5만 건 개선
-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계산 시 총 57.5억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 정부 3.0 가치

- 소통과 협력으로 부처 중심주의 극복
 - 외국인행정은 다른 국가들과 같이(영국, 캐나다 등) 이민업무 담당인 법무부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04년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중관리 발생
 -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체류 관리의 책임을 지는 법무부와 갈등 발생 ('13년말 현재 불법체류율 20.7%)
 - '14.3.20.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계기로 부처중심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자는 공감대 형성
 - * 수원 정수원돼지갈비 김미정 사장이 VIP에게 외국인 고용절차가 번잡함을 호소
- 수요자인 국민입장에서 정책개선 추진
 - 종래 일원화 논의가 양 부처간 서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서식일치 보다는 신고회수 감소가 중요
 - 예) 서식을 몇 칸으로 할 것인지, 어느 칸에 어느 사유를 담을 것인지 논의
 - * 신고내용 일치로 논의방향을 선회하여 답보상태이던 논의의 돌파구 마련
 - 법무부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나 시행규칙 개정예 상당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선 시행 후 시행규칙 개정기로 결정
 - * '14.6.30.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시행, '14년 하반기 중 시행규칙 개정 예정

마. 홍보 계획

- '14. 7월 고용주에게 문자로 일원화 실시 홍보
- '14. 7월 신고 일원화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 '14. 8월 공단 등 정책수요자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변경사항 홍보
- '14.11월 하이코리아 개편 관련 동영상 제작·배포 예정
- '14년 연중, 신고 위해 방문한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이 직접 홍보

참고

하이코리아 개선 전후 비교

개선 전	개선 후	비고
하이코리아 접속	하이코리아 접속	
로그인(회원가입)	로그인(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 입력 (대리인 입력화면 추가)
전자민원 신청 배너 클릭		
고용변동신고 클릭	고용변동신고 클릭	별도의 고용변동 신고 배너 신설
관련법령 등 안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체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회원가입 시, 대리인을 지정했을 경우 대리인이 가능
신고버튼 클릭	신고대상외국인 및 외국인별 신고내용 입력란 표출	회원가입 시 작성된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사업장 소속 전체외국인을 법무부 자료만으로 표출
신청하기 버튼 클릭		관련법령 등 안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체크 화면 동시 표출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신고사항 입력	신고사항 입력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첨부	
고용부와 법무부 자료 일치 여부 확인		법무부 전산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일치여부 확인 불필요
대상외국인 불러오기		
제출하기 버튼 클릭	제출하기 버튼 클릭	
고용부와 법무부 전송	고용부와 법무부 전송	외국인 등록번호와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전송 ※ 미일치자는 각 기관에 별도 표시하여 전소 행정처분 등 조치